

# 서울특별시 성북외국인노동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심사보고

의안 번호	2083
----------	------

2024년 11월 21일  
도시계획균형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제출일 : 2024년 8월 12일
- 다. 회부일 : 2024년 8월 14일
- 라. 상정일 : 제327회 서울시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차 도시계획균형위원회  
2024년 11월 21일 상정·의결 (원안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글로벌도시정책관)

- 외국인노동자센터는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상담·교육·문화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인지원시설로,
- 전문기관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 위탁으로 운영 중이며, 수탁기관의 수탁포기에 따라 재위탁 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제2항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시설개요

- 소재지 : 서울시 성북구 오패산로 16길 23 (하월곡동)
- 시설규모 : 23 $m^2$  (월곡종합사회복지관 2층, 사무실)
  - ※ 사무실 외 기타 시설은 종합사회복지관과 시설 공유를 통해 센터 운영
- 주요시설 : 사무실, 상담실, 강의실, 강당 등
- 인력운영 : 4명 (센터장은 복지관장 겸임, 과장1, 대리1, 팀원2)

#### 나. 주요 위탁 내용

- 위탁기간 : 3년(2025. 1. 1.~ 2027.12.31.)
- 위탁업무
  - 성북외국인노동자센터 관리·운영 및 사업 일체
    - 일반 상담 및 법률, 노무 등 상담사업 운영
    - 한국어교육, 사회통합프로그램 등 교육사업 운영
    - 문화체험 행사, 의료지원, 인권문화다양성 사업 등 운영
    - 센터직원 채용 등 인사관리, 회계운영, 시설관리 등 센터 운영 전반
- 소요예산 : 344,116천원(2025년)
  - 산출근거 : 인건비 263,711천원, 운영비 11,737천원, 사업비 68,668천원
- 수탁기관 선정방법 : 재위탁
  -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24.07.19)

## 다.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기존 외국인 노동자 위주에서 외국인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지원분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노동자센터”를 “외국인주민센터”로 명칭 변경
- 외국인주민을 위한 상담 및 교육사업, 문화지원 등 서비스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현장에서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현재 위탁 운영 중인 사회복지법인 혜명은 월곡종합사회복지관의 수탁 기간 만료('24.6.30.)로 성북외국인노동자센터의 수탁 포기를 요청하였으며, 공모를 통한 신규 수탁기관의 선정이 필요함
- 외국인주민의 한국생활의 적응력 향상 및 안정적 정착 여건 조성을 위해 공개모집을 통해 역량있는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재위탁 추진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7조, 제18조 및 제20조

#### 제7조(지원의 범위)

-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0. 외국인 노동자 권익 및 인권 보호

#### 제18조(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

- ① 시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외국인주민 지원시설 (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지원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법인·단체의 직원을 지원시설에 파견 근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단체·기관에 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이나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시설 및 센터의 운영지원 등)**

- ① 시장은 제18조제3항이나 제19조제3항에 따라 지원시설 또는 지원센터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2025년 예산편성 요구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서울시 성북외국인노동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추진  
계획(가족다문화담당관-9810, 2024.6.20.)

##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조성준)

### 가. 개요

- 이번 「서울특별시 성북외국인노동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기존 수탁법인의 수탁 포기 요청으로 인해 신규 수탁기관 선정이 필요한 ‘서울특별시 성북외국인노동자센터’에 대하여 재위탁을 추진하고, ‘외국인노동자지원’에서 ‘외국인주민지원’으로 그 명칭과 기능을 변경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sup>1)</sup>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 나. 성북외국인노동자센터 운영 현황

- 서울시는 「재한외국인처우 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라 재한외국인에게 사회적응에 필요한 각종 교육·정보제공 및 상담 등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지원시설 15개소<sup>2)</sup>를 운영하고 있음
- 이 중 외국인노동자센터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로, 서울시는 6개소의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며 그 중 5개소는 구립복지관의 시설을 활용하여 운영됨

※ 구립복지관의 시설을 활용하는 외국인노동자센터는 구립복지관장이 외국인노동자센터장을 겸임하고 센터 직원들은 구립복지관 소속 직원과 별도로 채용하여 운영됨

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의(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15조제6항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시장은 의회의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재위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외국인주민지원센터, 글로벌빌리지센터(7개소), 글로벌청소년지원센터, 외국인노동자센터(6개소)

### < 서울시 외국인노동자센터 운영 현황 >

구분	시설명	운영기관	소재지	규모	인력	개설일	'24년 예산 (백만원)	비 고 (위탁기간)
1	성동	(사)일일시호일	성동구 무학로	452㎡	5명	'01.12.14	410*	서울시소유 (23.1.1.~25.12.31.)
2	성북	사회복지법인 혜명	성북구 오패산로	23㎡	5명	'09.04.30	283	복지관 활용 임차 (23.1.1.~25.12.31.)
3	금천	사회복지법인 티뷰크복지재단	금천구 가산로	65㎡	5명	'07.05.01	266	복지관 활용 임차 (23.1.1.~25.12.31.)
4	양천	복지동행 사회적협동조합	양천구 목동동로	70㎡	5명	'09.04.28	285	복지관 활용 임차 (23.1.1.~25.12.31.)
5	은평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은평구 은평로	37㎡	5명	'08.02.14	275	복지관 활용 임차 (23.1.1.~25.12.31.)
6	강동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강동구 성안로	56㎡	5명	'08.03.15	273	복지관 활용 임차 (23.1.1.~25.12.31.)

\* 성동 계약심사액 401백만원

\*\* (성동 제외) 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이 외국인노동자센터장을 겸임

- 이번 동의안의 대상인 성북외국인노동자센터(이하 “성북센터”)는 성북구립 시설인 월곡종합사회복지관(이하 “월곡구립복지관”)의 프로그램실 일부를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법률·노무 등의 상담지원, 무료 양·한방진료, 직업능력향상 지원, 한국적응교육, 문화체험지원, 국가별 커뮤니티, 노동인권 캠페인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 성북외국인노동자센터 현황 >

○ 위 치	서울시 성북구 오패산로 16길 23 월곡종합사회복지관 내 프로그램실(23㎡)	
○ 인력운영	정원 5명(센터장, 과장, 팀장 각 1명, 사회복지사 2명)/현원 4명(센터장 결원)	
○ 운영시간	일~금, 09:00~18:00(매주 토요일, 공휴일 휴관)	
○ 주요기능	교육, 상담, 의료, 문화, 직업능력향상, 커뮤니티 지원 등	
○ 연도별예산	2억 8천 4백만원('24년), 2억 6천 9백만원('23년), 2억 5천 6백만원('22년)	
○ 공간현황(월곡종합사회복지관)		
구 분	규 모	운 영 내 역
옥 상	210㎡	하늘공원
4층	273.31㎡	아동발달지원센터, 프로그램실, 컴퓨터실, 동아리실
3층	381.40㎡	강당, 식당, 프로그램실
2층	363.31㎡	사무실, 센터장실, 프로그램실1, 프로그램실2, 카페
1층	499.90㎡	프로그램실, 월곡어린이집
지하1층	497.48㎡	지하주차장

- 성북외국인노동자센터의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에는 사업계획 대비 194%에 이르는 실적을 보였으나 2023년에는 96.4%, 2024년 6월 기준으로 48.9%에 이르는 실적을 보이고 있는바, 점차 실적이 감소 추세에 있는 만큼 그 원인분석과 대책 마련이 요구됨

**< 성북외국인노동자센터 사업추진 실적(2022년~2024년 6월) >**

(단위 : 명)

연도	계			상담지원			교육			의료	커뮤니티	기타 (인권 문화 등)
	계획	실적	대비(%)	소계	생활	전문	소계	한국어	기타			
2024.6	9,227	4,521	48.9	806	508	298	2,511	2,125	386	322	241	641
2023	9,316	8,982	96.4	1,568	1,049	519	5,506	4,586	920	580	189	1,139
2022	5,759	11,175	194	1,809	1,187	622	5,635	3,888	1,747	383	186	3,162

- 또한, 성북외국인노동자센터는 2009년 4월 개설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4차례에 걸쳐 수탁기관이 변경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성북센터가 소재한 월곡구립복지관의 수탁기관이 변경되면 기존의 성북센터 수탁기관은 수탁을 포기하고 월곡구립복지관의 수탁기관으로 변경되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음

**< 시기별 위·수탁기관 변경 내역 >**

월곡종합사회복지관	진각복지재단	혜명복지원	(사북)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13.10. '14.1.	'19.7. '20.1.	'23.1. '24.7.	'25.1. '27.12. '29.7.
성북외국인노동자센터	진각복지재단	혜명복지원	혜명	미정

\* 2009.4.30. ~ 2013.12.31.까지는 '사회복지법인 이랜드복지재단'이 수탁함

## 다. 민간위탁 재위탁의 타당성 검토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하 “재한외국인”)의 사회 적응 및 대한민국 국민과의 상호이해·존중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게 재한외국인의 처우 등에 대한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책무를 부여하고 있음<sup>3)</sup>
-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재한외국인처우 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8조<sup>4)</sup>를 근거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성북센터는 민간위탁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그리고 이번 동의안은 현재 수탁기관이 수탁포기 의사를 밝힘에 따라 새로운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는 「서울특별시 행정

### 3)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한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한외국인을 그 법적 지위에 따라 적정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3.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 4) 「서울특별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8조(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법인·단체의 직원을 지원시설에 파견 근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단체·기관에 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이나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조례”) 제2조제4호<sup>5)</sup>에 따른 ‘재위탁’에 해당하는 경우임

- 또한 지난 5월에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정책 마스터 플랜’<sup>6)</sup>에 따라 그 기능과 명칭을 ‘외국인노동자지원’에서 ‘외국인주민지원’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인바, 이는 「민간위탁조례」 제2조제6호<sup>7)</sup>에 따라 위탁내용 중 중요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됨
- 그리고 「민간위탁조례」 제4조의3<sup>8)</sup>은 ‘재위탁’을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번 동의안은 그 법률적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서울시는 2025년부터 점진적으로 성북외국인노동자센터센터를 비롯한 6개 외국인노동자센터의 기능을 외국인노동자 지원에서 외국인주민 지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음<sup>9)</sup>
- 현재 성북외국인노동자센터를 비롯한 5개 외국인노동자센터가 구립복지관에 소재하며 구립복지관과 외국인노동자센터 간의 위탁기간이 상이하 여 시설 운영의 곤란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볼 때, 향후 외국인노동자센터와 구립복지관의 분리 운영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5)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재위탁"이란 기존 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공개모집으로 다시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6) 「서울특별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며, 서울시는 이번 발표에서 5년간('24~'28) 2,506억원을 투입해 '우수 외국인인재 유치', '수요 맞춤형 외국인력 확충',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지원', '내·외국인 상호존중 및 소통강화'를 핵심으로 20개 핵심과제, 47개 세부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힘

7)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중요내용"이란 위탁유형 변경, 다른 위탁사무의 추가 또는 위탁사무 내용의 전면 변경, 기존 위탁사무의 분리와 그 밖에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8)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9) 6개 외국인노동자센터 중 2025년에 시 소유 시설인 '성동 외국인노동자센터'를 '동부 외국인주민센터'로 개편할 예정임

6.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7. 토론요지: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요지: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서울특별시 성북외국인노동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083
----------	------

제출년월일 : 2024년 8월 12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1. 제안이유

- 가. 외국인노동자센터는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상담·교육·문화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인지원시설로,
- 나. 전문기관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이며, 수탁기관의 수탁포기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제2항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시설개요

- 소재지 : 서울시 성북구 오패산로 16길 23 (하월곡동)
- 시설규모 : 23㎡ (월곡종합사회복지관 2층, 사무실)  
※ 사무실 외 기타 시설은 종합사회복지관과 시설 공유를 통해 센터 운영
- 주요시설 : 사무실, 상담실, 강의실, 강당 등
- 인력운영 : 4명 (센터장은 복지관장 겸임, 과장1, 대리1, 팀원2)

### 나. 주요 위탁 내용

- 위탁기간 : 3년(2025. 1. 1. ~ 2027.12.31.)

○ 위탁업무

- 성북외국인노동자센터 관리·운영 및 사업 일체

- 일반 상담 및 법률, 노무 등 상담사업 운영
- 한국어교육, 사회통합프로그램 등 교육사업 운영
- 문화체험 행사, 의료지원, 인권문화다양성 사업 등 운영
- 센터직원 채용 등 인사관리, 회계운영, 시설관리 등 센터 운영 전반

○ 소요예산 : 283,561천원(2024년)

- 산출근거 : 인건비 204,824천원, 운영비 11,737천원, 사업비 67,000천원

○ 수탁기관 선정방법 : 재위탁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24.07.18)

다.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기존 외국인 노동자 위주에서 외국인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지원분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노동자센터”를 “외국인주민센터”로 명칭 변경
- 외국인주민을 위한 상담 및 교육사업, 문화지원 등 서비스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현장에서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현재 위탁 운영 중인 사회복지법인 혜명은 월곡종합사회복지관의 수탁기간 만료('24.6.30.)로 성북외국인노동자센터의 수탁 포기를 요청하였으며, 공모를 통한 신규 수탁기관의 선정이 필요함
- 외국인주민의 한국생활의 적응력 향상 및 안정적 정착 여건 조성을 위해 공개모집을 통해 역량있는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재위탁 추진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7조, 제18조 및 제20조

##### 제7조(지원의 범위)

-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0. 외국인 노동자 권익 및 인권 보호

##### 제18조(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

- ① 시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외국인주민 지원 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지원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법인·단체의 직원을 지원시설에 파견 근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단체·기관에 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이나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20조(시설 및 센터의 운영지원 등)

- ① 시장은 제18조제3항이나 제19조제3항에 따라 지원시설 또는 지원센터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2025년 예산편성 요구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서울시 성북외국인노동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추진계획  
(가족다문화담당관-9810, 2024.6.20.)

※ 작성자 : 글로벌도시정책관 다문화담당관 김정애 (☎2133 -8690)